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4. 5. 2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5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0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4. 5. 20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영 남

가. 제안이유

공공시설물 관리·운영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향상을 위하여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0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따라 구 본청의 국별 분장 사무를 조정함.(안 제5조, 제6조)

- 생활복지국에서 관장하던 지방공기업(마포개발공사)관련업무 삭제
- 설립 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 분장 사무로 규정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0 동 건은 2004년 7월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제15호에 규정된 생활복지국장이 관장하던 지방공기업(마포개발공사)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29호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(마포구시설관리공단)의 결산안 승인 총괄과 경영평가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이 관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, 생활복지국장의 분장 사무중 현행조례 제6조제2항제16호에 규정된 “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”을 “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<검토의견>

0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7조에 규정된 공단에서 행하는 사업을 구분청 사업관련 부서별로 예산편성 및 지도감독 등을 관장하고 공단의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관장함으로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부합하고, 공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공단사업이 활성화 되어 주민생활편의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에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0 질의요지(박지위 위원) :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정일은?

0 답변요지(김영남 총무과장) : 7월 1일 예정임.

0 질의요지(유응봉 위원) : 시장운영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면 사무관장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가?

0 답변요지(김영남 총무과장) : 총괄 기능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분야는 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함.

○ 질의요지(유남열 위원) : 예산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되더라도 지도감독 등은 한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?

○ 답변요지(이은규 행정관리국장) :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됨.

○ 질의요지(전완수 위원) :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어느 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가?

○ 답변요지(이은규 행정관리국장) : 총괄적으로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서 보고함.

○ 질의요지(신봉현 위원장) : 행정사무 감사시 공단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수 있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영남 총무과장) : 시설관리공단의 총괄적인 업무사항은 가능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 5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공공시설물 관리·운영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향상을 위하여 설립 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따라 구 본청의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함.
(안 제5조, 제6조)

- 가. 생활복지국에서 관장하던 지방공기업(마포개발공사) 관련업무 삭제
- 나. 설립 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 분장사무로 규정함

3. 근거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(2004.1.29 법률 제07128호)제102조(행정기구)
- 나.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(2003.7.25 대통령령 제18064호)제10조제4항
- 다.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

4. 조례(안)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2004. 5.10
- 나.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9. 지방공기업의 결산안 승인 총괄, 경영평가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

제6조제2항에 제15호를 삭제하고, 제16호중 “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”을
“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기획재정국) ① (생략)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 28 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5조(기획재정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 28 (현행과 같음) <u>29. 지방공기업의 결산안 승인 총괄 경영평가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6조(생활복지국) ① (생략) ②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 ~ 14 (생략) <u>15. 지방공기업(마포개발공사)의 예산 · 결산안의 승인 총괄, 경영평가 및 지도감독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</u> <u>16. 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u> 17 ~ 37 (생략)</p>	<p>제6조(생활복지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 ~ 14 (현행과 같음) <u>15. (삭제)</u> <u>16.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</u> ---- ----- 17 ~ 37 (현행과 같음)</p>